

충청북도 대전세계박람회 참가 외국 정부의 대표 등의 자동차 취득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전세계박람회(이하 '대전엑스포' 93"이라 한다)에 참가하는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의 대표 또는 운영요원 등 (이하 "외국참가자"라 한다)이 대전엑스포 '93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대상) 이 조례는 다음 각호의 자동차로서 대전엑스포 '93 참가를 목적으로 세관장에 의하여 재반출 조건으로 일시 수입허가를 받아 취득한 자동차와 대전엑스포 '93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.

1. 대전엑스포 '93에 참가하는 국가 및 국제기구 대표사무소의 공용자동차
2. 대전엑스포 '93에 참가하는 국가 및 국제기구의 정부대표 및 운영요원용 자동차

제3조(과세면제) 외국참가자가 취득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.

제4조(사무처리의 위임)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에 관한 사무는 당해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.

제5조(면제신청) ①외국참가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·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다만, 시장·군수가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.

②시장·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록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적용예) 이 조례 시행당시 외국참가자가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.

③(적용시한)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3월 31일까지 적용한다.